

영등포구의회  
제191회 임시회

『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 
일부개정조례안』

檢 討 報 告 書

【영등포구청장 제출】



2015. 10. 19

行 政 委 員 會  
專 門 委 員 金 基 永

『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 
일부개정조례안』

# 檢 討 報 告 書

## 1. 경 과

의안 제82호로 2015년 10월 7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5년 10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.

## 2. 제안이유

지역 안전 및 재난 총괄 조정, 안전문화 확산 등 사회 안전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총괄 수행하는 조직을 구성하고, 행정환경의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조직으로 개편하여 운영하고자 함.

## 3. 주요내용

가. 재난안전 전담 부서인 ‘도시안전과’를 안전건설국에 신설

나. 구민이 이해하기 쉽고 업무 성격에 맞는 부서명으로 변경

- 세무과 → 징수과
- 안전치수과 → 치수과

다. 팀 재배치에 따른 국간 업무 이관

- 자치법규안의 심사, 소송에 관한 사항 : 재정국으로 이관
- 기록물관리 및 문서관리·보존에 관한 사항 : 행정국으로 이관
- 민방위 기본계획의 수립, 민방위대 편성, 민방위 훈련 및 비상대비에 관한 사항 : 안전건설국으로 이관

#### 4. 참고사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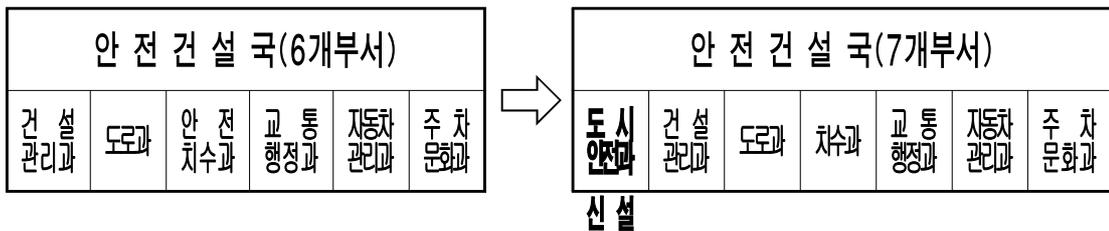
##### 가. 관계법령

- 「지방자치법」 제112조
-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13조

나. 예산 조치 : 별도 조치 필요 없음

#### 5. 검토의견

- 본 개정 조례안은 영등포구의 재난 및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재난안전 전담기구를 신규 설치하는 등 행정환경 변화에 맞게 조직을 개편하려는 것으로써 종전 5국 1담당관 29과가 5국 1담당관 30과로 개편되어 1개 부서가 안전건설국에 신설되는 것임.



-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, 신설 예정인 ‘도시안전과’는 종전 ‘안전치수과’의 안전·재난관리 업무와 ‘자치행정과’의 민방위 업무 및 ‘홍보전산과’의 통합관제운영 업무를 이관 받아 재난의 예방·대비·대응·복구와 안전문화 활동 등 지역 재난대응의 컨트롤타워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려는 것임.

참고로, 서울시 자치구 25개구 중 36%인 9개구<sup>1)</sup>가 재난 안전 전담기구를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음.

- 또한, ‘세무과’를 ‘징수과’로 명칭을 변경하여 구민들이 부서에서 하는 일을 쉽게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, ‘안전치수과’는 ‘치수과’로 변경하여 하천·빗물펌프장 관리 등 치수분야 업무 담당 부서로서의 기능을 갖도록 하였음.
- 그 밖에, 자치법규안의 심사 및 소송업무와 지방의회 업무를 분리하여 법무행정의 전문화와 효율성을 제고 하였으며, 기록물관리 및 문서관리·보존 업무를 민원처리 부서에서 처리 하도록 하여 업무의 연계성과 민원 편의성을 추구하였음.
- 구민 안전을 위한 통합적 안전관리 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재난안전 전담기구인 ‘도시안전과’를 설치하는 것은 안전에 대한 구민들의 높은 관심과 이에 대한 대응성을 강화하는데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됨.
- 다만, 부서명칭 변경, 업무이관 등의 조직개편이 그 동안 같은 내용으로 반복되어 구민에게 혼란과 혼선을 주고 행정력을 낭비하는 사례가 없었는지 사전에 면밀한 검토가 요구됨.

---

1) 용산구, 동대문구, 중랑구, 양천구, 금천구, 관악구, 서초구, 강남구, 송파구

# 참 고 자 료

## 1 지방자치법

**제112조(행정기구와 공무원)**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.

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③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적정하게 운영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.

## 2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

**제13조(시·군·구의 기구설치기준)** ① 시·군·구 본청의 실·국이나 과·담당관과 자치구가 아닌 구의 과·담당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, 시·군·구 본청에 두는 실·국이나 실·과·담당관의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.

② 시·군·구 본청의 실장·국장과 과장·담당관의 직급과 실·과·담당관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.

③ 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는 관할 시·군·구 조직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구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시달할 수 있다.

④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실·국과 실·과·담당관의 명칭과 사무분장을 시·도와 시·군·구간 사무의 연계성과 그 기능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.